

경우가 많은 現實로선 費用支給에 관한規程을 制定하는 것은 需要하다고 思料된。

○ 단, 證人등이 虛偽의 陳述이나 鑑定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費用支給을 制限할 수 있는 條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봄.

○ 참고 말씀드리면 國會의 경우 國會法 第129條 및 國會에서의證言·鑑定等에 관한 法律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全文6條의 “國會에서의 證人등 費用支給에 관한 規則”을 制定·施行하고 있음.

以上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金寅東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었습니다. 質疑와 討論을 하실 委員이 있으시면 質疑·討論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文普委員 專門委員의 制定理由와 主要骨子와 檢討意見을 보니까 상당히合理的의이고妥當性이 있다고 생각해서 異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委員長 金寅東 그러면 質疑·討論이 없으시기 때문에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議會에서의證人等費用支給에 관한規程案에 대하여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特別市議會에서의證人等費用支給에 관한規程案

第1條(目的) 이 規定은 서울特別市議會(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證人, 鑑定人 및 參考人(이하 “證人等”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費用의 支給基準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費用) ① 證人등에 支給하는 費用은 運賃(鐵道, 船舶, 航空 및 自動車), 現地交通費, 宿泊料, 食費 및 食卓料로 한다.

② 第1項의 費用 이외에 鑑定을 위하여 議

會 議長이 특히 需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鑑定料를 支給할 수 있다.

第3條(費用의 支給基準) 證人等에 대한 費用支給에 관하여는 議會議員報酬等에 관한條例 별표1 및 별표2를 準用한다.

第4條(費用 支給日數의 計算) 證人등에 支給하는 費用은 議會 또는 指定된 場所에 出席한 날로부터 證人 등으로서 滞在한 日數에 의하여 이를 算定한다.

第5條(費用支給의例外)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는 費用을 支給하지 아니한다.

1. 市議會議員
2. 所屬機關에서 따로 費用을 지급받는 公務員
3. 市傘下 公社·工團의 任職員

附 則

이 規定은 1992. . 부터 施行한다.

4.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林東奎議員外 1人 發議)
5. 서울特別市議會議員報酬等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林東奎議員外 1人 發議)
6.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林東奎議員外 1人 發議)

(11時 27分)

○ 委員長 金寅東 議事日程 第4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委員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議事日程 第4項, 5項, 6項은 審查할案件의 내용이 간단하므로 一括上程하여 處理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異議가 없으시면 一括上程해서 處理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리면 議事日程 第4項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5項 서울特別市議會議員報酬等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6項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一括하여 上程합니